

일본 原電의 첫 勞災認定

— 그 실상과 해설 —

[실 상]

東京電力의 福島제1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남성 작업원(사망 당시 31세)의 노재 보상이 1991년에 처음으로 인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작업원은 1979년 11월에서 1980년 9월 까지 11개월 동안 원자로 안의 배관 부식균 열 대책공사에 종사했다. 그 후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 진단되어 1988년 2월에 31세로 사망했다. 그런 후 동년 9월에 유족으로부터 福島의 富岡노동기준감독서에 노재인정의 청구가 있었다.

작업원이 11개월 동안 피폭된 선량은 40m Sv로 원자로 등 규제법상의 방사선 방호기준(연 50mSv) 미만이었지만 노동성의 노재 인정기준에 있어서의 선량한도(연 5mSv×종사 연수)를 상회하고 있었고, 다른 기준요건에도 해당이 된다는 판단에서 1991년 12월에 작업 시의 피폭이 백혈병의 원인이라는 노재인정이 내려졌다. 이것은 전국에서 첫번째 케이스이다.

한편 5월 6일에는 중부전력의 濱松원자력 발전소에서 작업에 종사하여 백혈병으로 사망한 원자력발전소 노동자의 유족으로부터 濱松노동기준국에 대해 노동재해 인정의 청구가 있었다. 청구자는 濱松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작업에 종사한 남성 작업원(사망 당시 29세)의 양친. 사인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노동성에서는 「지금부터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노동성에 의하면 이 福島와 濱松의 사례를 포함하여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작업피폭을 이유로 한 노재 인정청구가 지금까지 5건이다. 이 중 한 건은 1982년에 島根노동기준 감독서에 청구가 있는 건으로 이것은 노재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1992년 두 건의 청구가 神戸노동기준 감독서에 있었는데 조사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5월 7일의 閣議 후에 있었던 회견에서 村上正邦 노동상이 기자단의 질문을 받아 원자력발전소에 있어서의 종사자 피폭선량 한도를 인하하는 검토를 조속히 하도록 관계 省廳에 독촉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것에 대해 노동성의 久保田 부주임 중앙 노동위생 전문관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1990년 권고에 따른 재검토의 의향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현재의 방사선 방호기준을 노재 인정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라고 했다.

ICRP 90년 권고(퍼블리케이션 60)에는 종사자의 피폭선량 한도가 「5년간의 평균으로 20mSv를 초과하지 않을(임의의 1년간 선량이 50mSv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라 되어 있어, ICRP의 77년 권고(퍼블리케이션 26)에 따른 현행의 기준인 「연 50mSv를 초과하지 않을 것」보다 엄격한 기준이다. 현재 국내의 관련법령에의 도입이 목하 방사선 심의회에서 검토중에 있다.

(해설)

방사선 방호기준과 노재기준 노동성 「별개의 것으로 인식」

노동성에서는 1976년 11월에 노동기준 국장 통달의 형식으로 「電離방사선에 걸리는 질병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 종사하는 운전·보존요원이나 방사선 검사 기사들의 직업병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 중 백혈병의 경우 ① 상당량의 방사선 피폭 ② 피폭 개시후 1년 이후의 발병 ③ 골수성 백혈병 또는 임파성 백혈병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 인정조건이다. 첫번째 요건인 「상당량」에 대해서는 $0.5\text{rem}(5\text{mSv}) \times \text{피폭업무 종사연수로 되어 있다.}$

이 0.5rem이라는 기준은 방사선의학 전문가나 일반 공중위생 전문가 등에 의한 검토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일반공중에 대한 당시의 법적 피폭선량 한도와 결과적으로 같게 되어 있다. 노재인정은 이 세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며, 청구가 있으면 우선 노동기준국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특히 백혈병은 그 원인을 특정짓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에 의한 기술적 검토를 거친 후에 노재 적용의 가부를 판단한다.

이 기준에 나타난 피폭선량 한도는 연단위로 보면 사업자측으로는 방사선 방호기준의 「연 50mSv」를 초과하지 않는다」와의 기준보다 10배 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노동성의 石井義脩 직업병 인정대책 실장보

좌는 「방사선 방호기준과 노재 인정기준은 별개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면 공사현장 등에서 대체로 2m 높은 곳에서 낙하하면 상해를 입을 것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준(방사선 방호기준에 해당)이라면 1m반의 높이에서 낙하해도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사업자측으로는) 보다 엄격한 것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노재와의 성격적 차이를 설명한다.

실제로 노동성은 電離방사선의 장해방지 규칙으로 방사선방호에 관한 종사자의 선량 한도를 연간 50mSv라는 선량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방사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省廳의 관련법령과의 균일화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로 등 규제법상의 방호 기준 등과 같은 수치이다.

이런 방사선 방호상의 관점에서 보면 종사자의 피폭선량이 1991년과 92년 모두 연평균으로 최저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각 전력회사가 방사선 관리에 지대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에 학술적으로는 엄밀하게 低방사선 영역의 방사선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現狀이나 암발생과의 인과관계와 그 메카니즘이 완전히 해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만큼 이 미묘한 문제의 취급은 신중을 요한다. 적어도 사회적 논의에 있어 수자만이 탁상공론인 사태만은 회피해야 할 것이다.

(1993. 5. 13付 일본원자력 산업 신문)